

## 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나. 변경시행일 : 2021년 12월 08일(수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- 1) 운용역 변경 (윤성주→박성진)
- 2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3) <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> 개정

### 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<b>투자결정시 유의사항</b>		
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12.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,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a>
<b>요약정보</b>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: 윤성주	<a href="#">운용전문인력 : 박성진</a>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바.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: 해당사항 없음</a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1) 운용역 변경 (윤성주→박성진) 2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3) &lt;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&gt; 개정</a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: 윤성주	<a href="#">운용전문인력 : 박성진</a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, “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”	<a href="#">&lt;신 설&gt;</a>	<a href="#">[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]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기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1. 주의(Yellow) : 발생 Event에 대한 자본시장 영향 분석 → 운용전략의 조정 및 유동성관리 재검토</a>

		<p>2. <u>경계(Orange) : 위기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→ 유동성 점검 등 발생 현안 논의, 관리방안 마련 및 자산매각순서 등 검토</u></p> <p>3. <u>위기(Red) : 위기전담조직 운영 강화 → 펀드별 유동성 확보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, 환매 연기방안 마련</u></p>
<p>10. <u>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“라.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”</u></p>	<p>&lt;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&gt;</p> <p>(1)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(매우높은위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<u>사전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%초과인 구조화된 상품(전략)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/ul> <p><u>&lt;③신설&gt;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 <p>2등급(높은위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<u>투기등급채권 등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 <p>3등급(다소높은위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(주식형 및 주식파생형)</li> <li>· <u>사전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%이하인 구조화된 상품(전략)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· <u>투기등급채권 등에 8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 <p>4등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<u>투기등급채권 등에 5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· 중위험자산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	<p>&lt;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&gt;</p> <p>(1)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(매우높은위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</li> <li>② <u>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③ <u>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ol> <p>2등급(높은위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② <u>레버리지(차입)을 일으키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ol> <p>3등급(다소높은위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②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(주식형 및 주식파생형)</li> <li>③ <u>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④ <u>레버리지(차입)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⑤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ol> <p>4등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② 중위험자산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③ <u>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(예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귀책사유 이외의 협약 해지 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)</u></li> </ol>

	<p>5등급(낮은위험)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</u></li> <li>·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<u>사전계획된 수익구조가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(전략)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단,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- 이상으로 한정)</u></li> <li>· 저위험자산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li>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 <p>6등급(매우낮은위험) (생략)          &lt;각주&gt;          1. (생략)          2. 고위험자산이란 주식, 상품(Commodity), 리츠, 지분(유한회사, 합자회사, 조합 등), 부담보부대출 및 대출채권 등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         3. <u>투기등급채권</u> 등이란 <u>투기등급채권(BB+이하), 투기등급CP(B+이하), 자산유동화관련 채권(BBB+ 이하), 후순위채권, 주권관련사채권</u> 등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         4. <u>중위험자산이란 채권(BBB-이상), CP(A3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, 건물에 대한 소유권</u> 등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</p> <p>5~12(생략)</p> </p>	<p>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      5등급(낮은위험)  <u>&lt;삭제&gt;</u>         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<u>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(단,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- 이상으로 한정)</u>         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        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</p> <p>6등급(매우낮은위험)(현행과 같음)          &lt;각주&gt;          1.(현행과 같음)          2. 고위험자산이란 주식, 상품(Commodity), 리츠, 지분(유한회사, 합자회사, 조합 등), <u>투기등급채권 등*, 무담보대출 및 대출채권, 파생상품</u>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 <u>* 투기등급채권 등: 투기등급채권(BB+이하), 투기등급CP(B+이하), 자산유동화관련 채권(BBB+ 이하), 후순위 채권, 주권관련사채권, 신종자본증권, 조건부자본증권(contingent convertible bond, CoCo bond)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</u>          3. <u>중위험자산이란 채권(BBB-등급이상), CP(A3-등급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,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</u>,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         4~11(현행과 같음)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“나. 과세”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        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<u>개정세법 반영</u></p>
<p>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</p>		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[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]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: 윤성주	<a href="#">운용전문인력 : 박성진</a>